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3

발의연월일: 2020. 11. 5.

발 의 자: 강기윤·김희국·최형두

김예지 • 박성중 • 구자근

이종성 · 김희곤 · 윤영석

전봉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서로에게 동행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 출동한 경우는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유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인천,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미 접수된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 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5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현장출동) ① ~ ⑤ (생	제11조(현장출동)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⑥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
	<u>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u>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
	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 ④ (생	및 취소와 변경)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
	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